

2025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2025 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위치정보법의 이해





CONTENTS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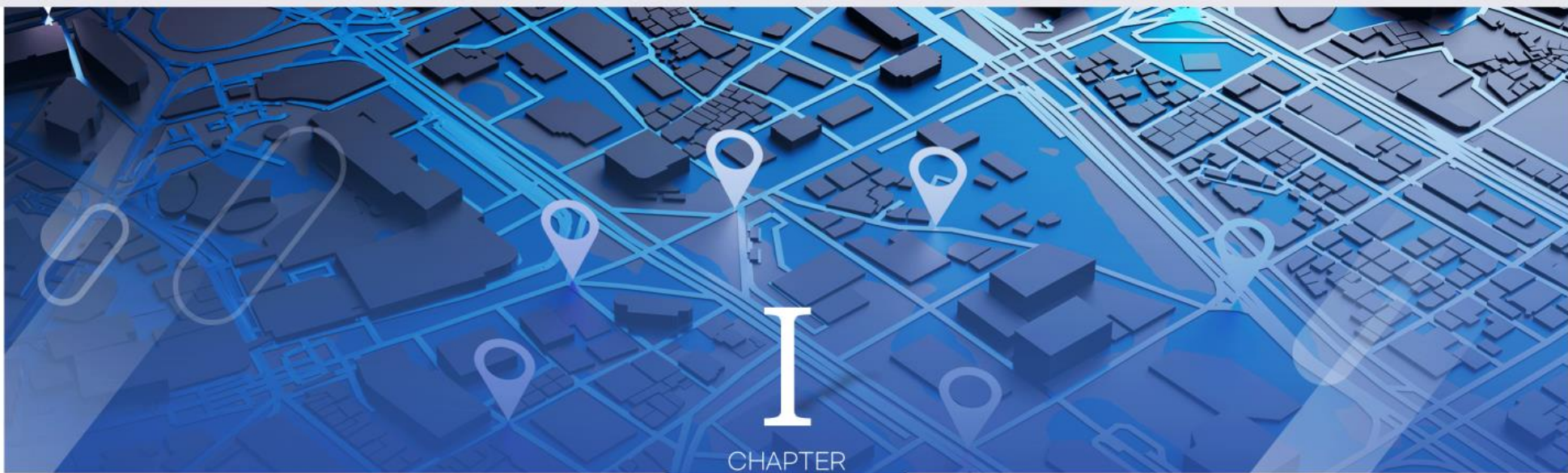
I 개요

CHAPTER

II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CHAPTER

III 위치정보 점검 준비 관련 주요 내용



CHAPTER

개 요

02 위치정보법 주요 용어 및 법률적용 대상

위치정보 정의

1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 휴대전화,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

2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
- 과거 및 현재의 장소에 관한 정보

3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

- 통상적으로 GPS, Wi-Fi, 기지국, 비콘, NFC 등 측위 설비를 통해 생성·수집된 정보를 의미

※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가 아닌 눈으로 본 장소의 정보, 쇼핑물 가입 시 입력한 주소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02 위치정보법 주요 용어 및 법률적용 대상

개인위치정보 정의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통상적으로 차량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에 해당하나 배차일지 등을 통해 용이하게 결합하여 운전자(개인위치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



참 고

결합가능성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입수가능성

- 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여도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 ②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02 위치정보법 주요 용어 및 법률적용 대상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정의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

• 위치정보 제외

법 제2조 제4호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정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

• 위치정보 제외

법 제2조 5호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항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4의2호

03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위치정보사업 정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안에서 근태관리, 보안구역 감시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위치정보법 해설서 참조)



법 제2조 제6호



위치정보사업자 유형

- 측위설비(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 와이파이(Wi-Fi), 비콘(Beacon) 등을 설치하여 각 기기의 장소별 신호DB를 구축한 후 이용자 단말기 수신 데이터를 통해 위치를 측위하며, GPS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자체로 위성신호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를 측위 (OS사업자(구글, 애플), 이동통신사가 대표적인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



03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정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내부의 근로감독 또는 관리 등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위치정보법 해설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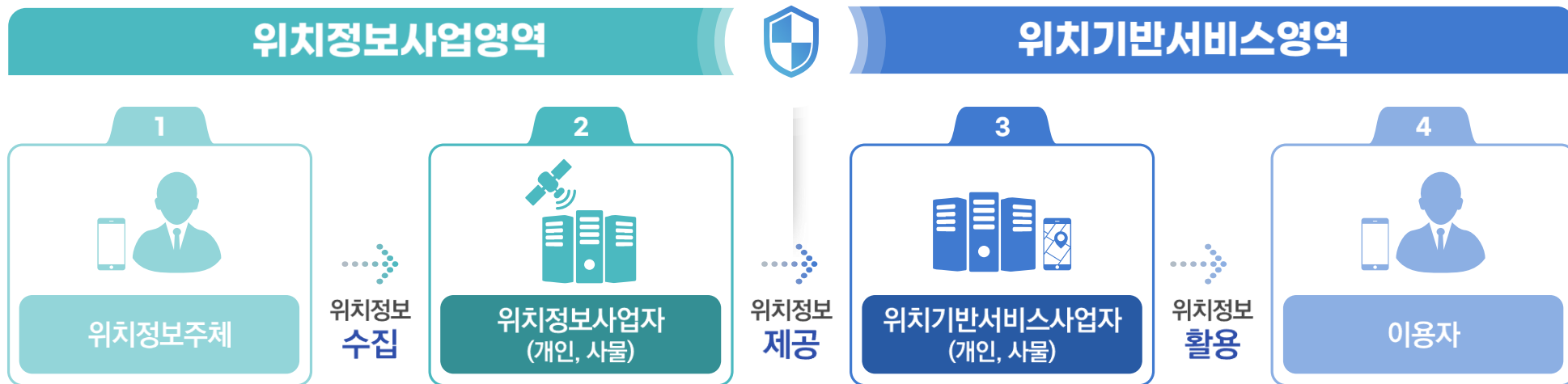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유형

위치정보사업자가(OS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측위한 위치정보를 앱 형태 (앱개발시 위치정보 사용권한을 설정(Geo location API(구글), Core location API(애플)) 또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차량관제, 내비게이션 등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대상 여부는
위치정보지원센터(02-588-0185)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03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 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



구분		행정절차
개인	위치정보사업	등록
사물		신고
개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사물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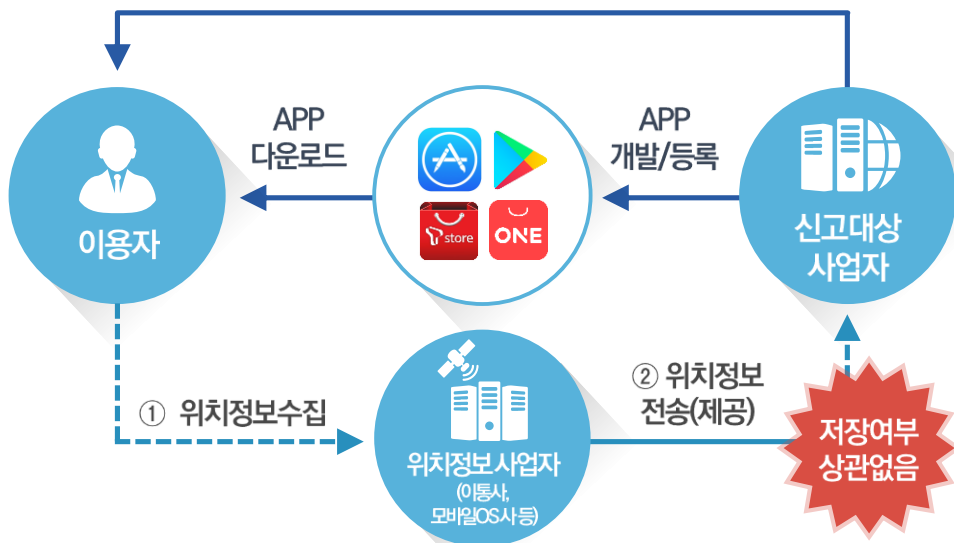
04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신고대상



비신고대상

③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이용·제공 동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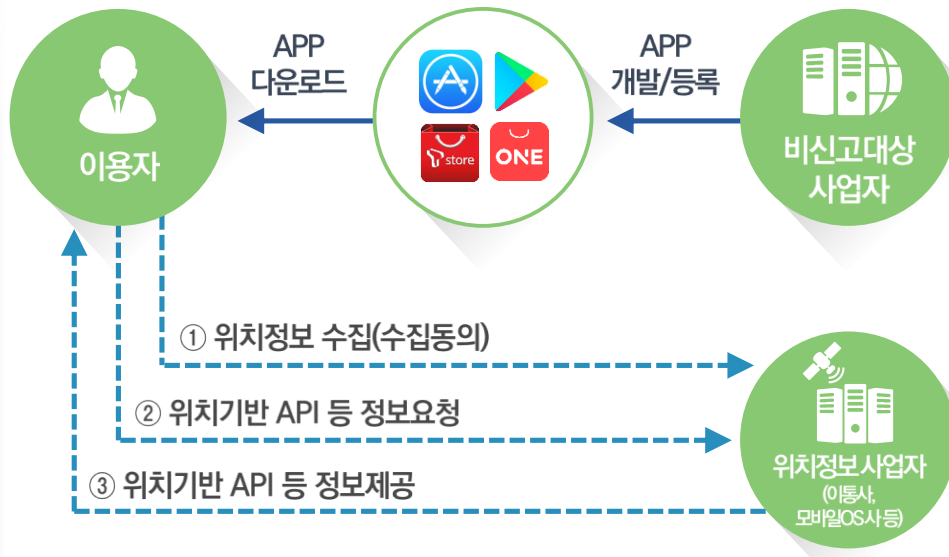


위치정보 트래픽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절차

* 예) 이용자 위치정보를 신고사업자 DB(지도 등)와 가공·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예시



위치정보 트래픽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절차

* 예) 단말기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업자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단말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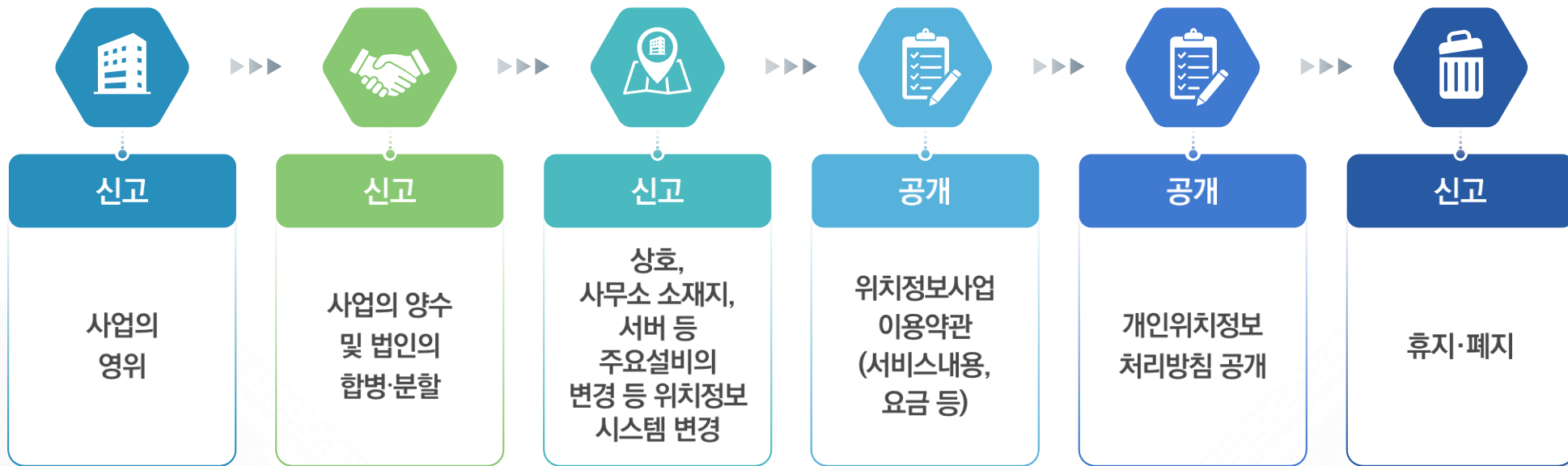
05 개인위치정보사업 관련 행정절차



06 개인위치정보사업 관련 주요 벌칙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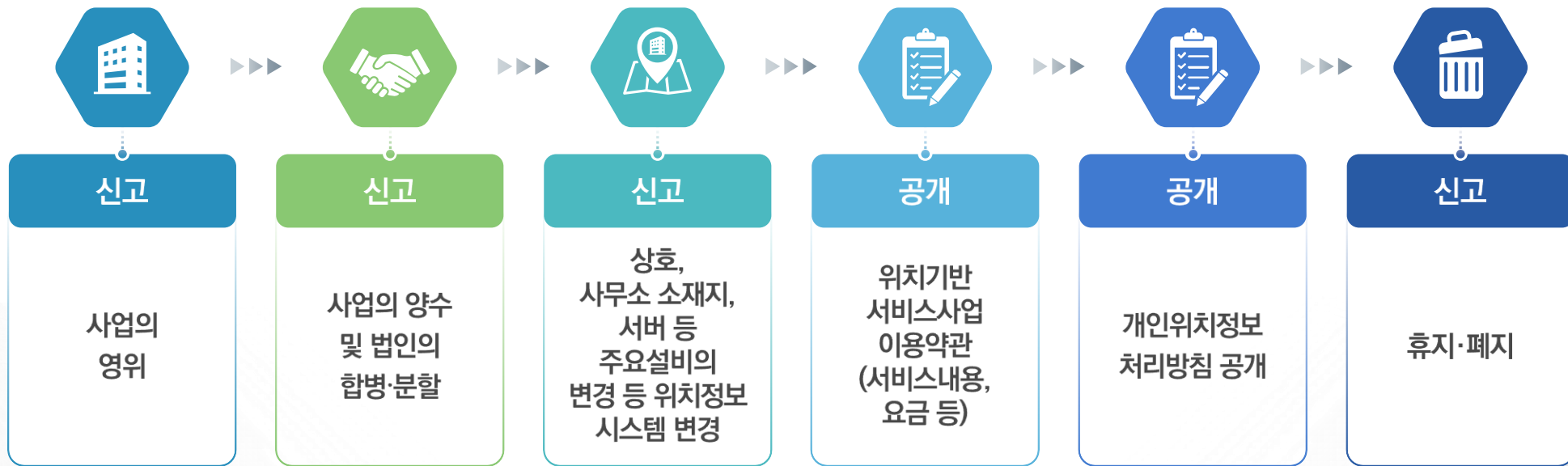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사업의 영위	• 등록을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1호
변경 등록	•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
양수 및 합병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 제2호
이용약관	•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7의2호
휴지·폐지	• 휴지·폐지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 승인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1항 제3호
상호,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3항 제1호

07 사물위치정보사업 관련 행정절차



방송통신위원회

08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행정절차



※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09 사물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주요 벌칙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사업의 영위	• (사물위치정보)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의2호
	• (위치기반)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제40조 제2호
양수 및 합병	•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 신고를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1호
이용약관	•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7의 2호
휴지·폐지	• 휴지·폐지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2호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1호
상호,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3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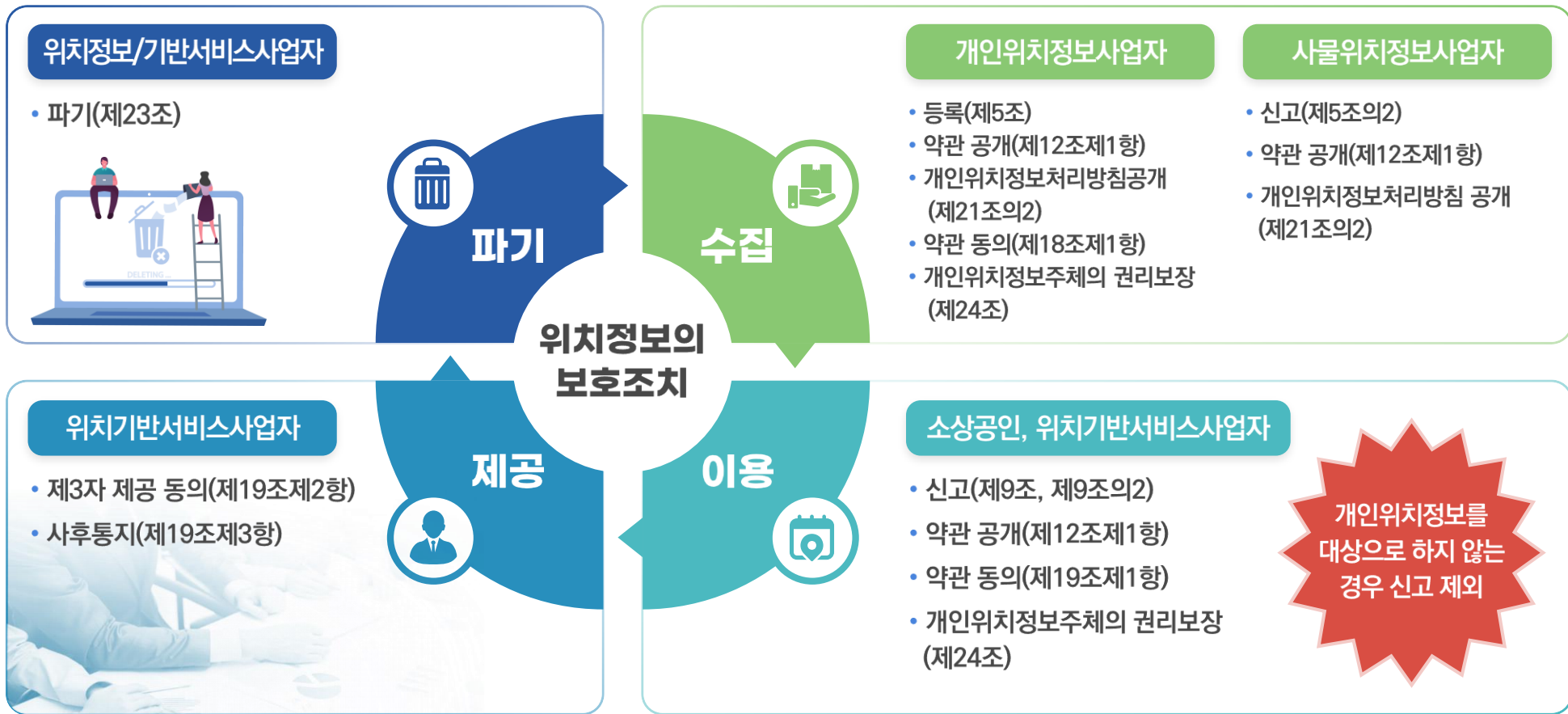


II

CHAPTER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01 의무사항에 대한 요약 장표



이용약관의 공개(제12조)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포함)

공개방법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개

이용약관 변경

이용약관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벌칙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이용약관의 공개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호

03 **이용약관 필수 규정****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대상)****법 제12조 제1항**

- 서비스의 내용,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법 제18조 제1항 각호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시행령 제22조**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법 제12조 제1항**

- 서비스의 내용,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법 제19조 제1항 각호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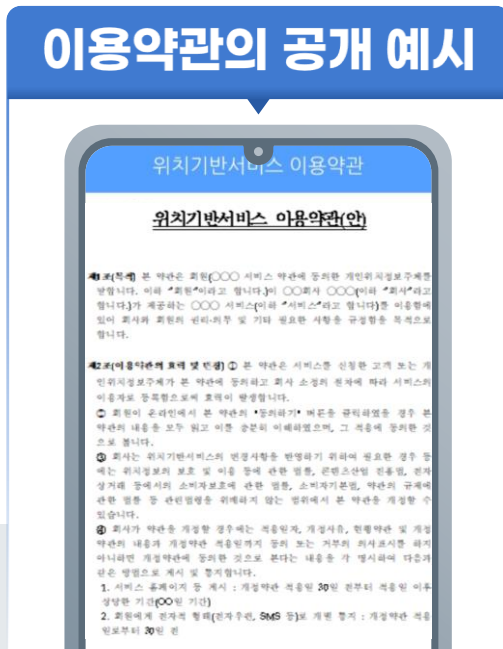
4-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시행령 제23조**

-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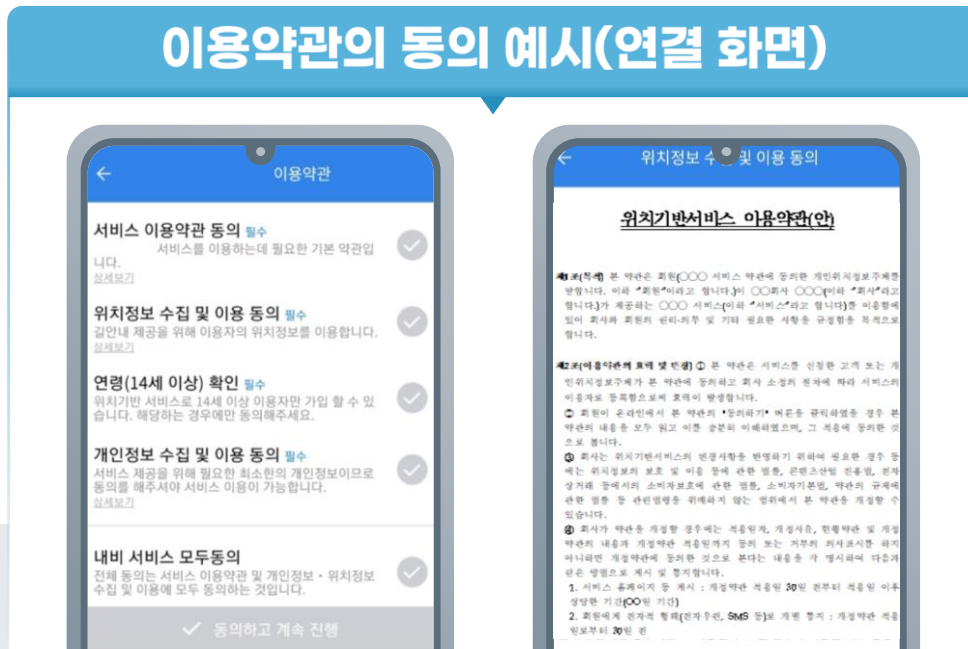


04 이용약관의 공개 및 동의 방법(예시)

이용약관의 공개 예시



이용약관의 동의 예시(연결 화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표준 이용약관 다운로드

위치정보지원센터(www.lbsc.kr) 접속 → 자료 및 서식(등록/신고 서식 자료실) → 참고용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

05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시 동의(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2항)

개인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ex : 친구 찾기, 안심 알림 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함



벌칙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3호

06 이용약관 및 동의 FAQ

Q

“ (겸업사업자의 이용약관 운영)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함

Q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만 위치정보주체와
접점이 있을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A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주체의
접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힘든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대신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달 가능

Q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약관 형태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A

개인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호, 제19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함

07 사후 통보

사후통보 대상 및 방법(강행규정)(제19조3항)

- | | |
|------|--|
| 대상 | •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ex : 친구 찾기, 안심 알림 서비스 등) |
| 통보내용 | •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목적 |
| 통보방법 | • 해당 통신단말기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특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즉시 통보 |
| 벌칙규정 | •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모아통보(임의규정)(제19조4항)

- | | |
|------|---|
| 절차 | •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보 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 제한기간 | • 최대 30일 |
| 통보방법 | • 즉시통보와 동일 |



08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사업의 전부 또는 폐업**하는 경우 개인위치 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하고, **휴업**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법 제23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 후 즉시 파기** 하여야 함

법 제24조 제4항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벌칙규정

법 제40조의2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제2호

제8조 제4항 또는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2항 제8의2호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 제8의3호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9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공개****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공개****법 제21조의2**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6.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벌칙규정**법 제43조 제2항 제7의2호**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제정 사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통제권의 실현은 사전적인 장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권)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후적인 장치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

동의 철회,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권, 일시중지 요구권

일시정지요구권**입법취지**

-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달리 시의를 전제로 동태적 성격을 지니므로 **이용자는 시간·대상 등을 한정하여 일시적인 동의유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내용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함**

벌칙규정

- 제24조 제2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적인 이용 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법정대리인의 권리

입법 취지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개정 2018. 12. 24)



위치정보법상 연령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철회 동의 규정

구분	수집·이용 동의	동의 철회	관련 조문
8세 이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제26조
8세 초과 14세 미만	본인 + 법정대리인	본인 + 법정대리인	제25조

벌칙규정

법 제43조 제2항 제10호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III

CHAPTER

위치정보 점검 준비 관련 주요 내용

01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운영

Q

“

(겸업사업자의 이용약관 운영)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 통합 운영 가능

Q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A

「위치정보법」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공개)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

02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위치정보 관리지침 마련

Q

“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사업자 자체적으로 별도
마련해야 하는지?

A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제3호에서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

구분	작성 방법
1. 목적	o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수립의 목적을 기재
2. 위치정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o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적용 기술 등)에 맞도록 내용을 기재
3. 위치정보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3.1 조직 구성도	o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관리자, 취급자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
3.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o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 담당 부서의 장
3.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o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기재
3.4 위치정보취급자 및 역할	o 위치정보취급자 및 역할을 기재
3.5 위치정보 권한 제한 등	o 위치정보취급자의 변경사항 내용 기재

02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구분	작성 방법
4. 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	
4.1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및 관리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등 취급대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	○ 위치정보주체의 이용·제공사실 열람·고지 요구 및 불만 대응 등에 관한 사항
4.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 장치 운영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 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4.4 위치정보의 보유 및 파기	○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절차	
5.1. 위치정보 침해사고 보고 및 신속대응팀 운영	○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신속대응팀 운영에 관한 사항
5.2. 위치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 위치정보 침해사고 대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육	
6.1 목적	○ 위치정보보호 교육의 목적
6.2 교육 내용	○ 위치정보 관련 법령, 절차 준수 등
6.3 교육 일정	○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인 직원대상 위치정보보호 교육 실시계획을 기재
7. 정기적인 내부 보안 감사	○ 연 1회 이상 내부 정기 감사 실시
8.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지침	○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차단, 암호화 등 보호조치

03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명시 항목 관련

Q

“

이용약관 명시 항목 중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유 목적 및 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

A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위치정보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유 근거 및 기간(6개월 이상 의무)을 약관에 명시

04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관련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

Q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정의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 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 제외)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4호)

A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정의

“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 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 · 제공일시 및 이용 · 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법 제2조5호)

04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구성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자동기록보존) +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대상	요청서비스	요청자	수집방법	수집요청일시	수집완료일시
자녀	위치관제	서비스 제공자	NFC	2025.01.11. 14:20	2025.01.11. 14:20

<열람·고지 확인자료>

취급자	요청자	목적	일시
서비스 제공자	자녀	자녀 등하원 확인 서비스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요청	2025.01.15. 15:00

04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관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구성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자동기록보존) +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대상	취득경로	취급자	제공서비스	제공받는자	이용일시
자녀	Cell-ID	서비스 제공자	자녀 등하원 확인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2025.01.11. 14:20

<열람·고지 확인자료>

취급자	요청자	목적	일시
서비스 제공자	자녀	자녀 등하원 확인 서비스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요청	2025.01.15. 15:00

05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침해사고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Q

“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 중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침해사고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A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1항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제4호에서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명시

사고 발생 · 발견 또는 발생 시점



06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등

Q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은 어떤 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A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장치의 운영”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자동기록·보존되도록 하여 저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는 조치 필요(해설서 p.89)

Q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후 위치정보는 바로 삭제합니다. 이 경우, 실태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위치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 등)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삭제하더라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면 실태점검표 제출필요, 위치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자동 삭제 파기 소스코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필요

Q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접근 기록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A

위치정보 관련 사업 개시한 시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 접근기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신 뒤, 하단에 추가 설명 필요
(예: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0000년 00월 00일부터 개시하여, 해당 시점인 0000년 00월 00일 부터 기록된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자료를 제출합니다.)

07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안전한 식별·인증수단 적용

Q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수단을 말하는 건가요?



A

안전한 인증 수단이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위치정보사업자등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의 적용을 말함 (안전한 인증수단 예시 : 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

구분	인증 수단	비고
지식 기반	비밀번호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및 변경주기 고려 • 비밀번호 도용,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 •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필요
	인증서(PKI)	•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
	OTP (One Time Password)	• OTP토큰,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
소유 기반	기타	• 스마트 카드 방식 •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
	생체 기반	•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 ※ 참고 : FIDO(Fast Identity Online)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